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강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이씨케미칼(주)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2년 3월 22일 (화)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4번지, 제이씨케미칼(주) 신항공장 회의실 (3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호 보고 : 제16기(2021.1.1.~2021.12.31)영업보고 및 감사위원회보고

제2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

제3호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삼일회계법인, 2022년 ~ 2024년)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16기(2021.1.1~2021.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배당 주당 : 150원)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겸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 경)

제4호 의안 : 제17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새도우보팅)제도가 2018년1월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당사 본·지점 및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제반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2년3월12일 오전9시부터 2022년3월21일 오후5시까지

※ 상시기간 중 24시간(휴무일 포함) 의결권 행사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 기침 등 감염이 의심 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주님들의 감염위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 시 소집 결의 변경에 관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4일

제이씨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사 호 (직인생략)

[첨부1]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 변경

현행	변경
<p>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좌동</p> <p>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전자적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요건 변경

- “제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상법상 “전자투표도입 규정” 과 코스닥협회의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에 맞춰 개정함

현행	변경
<p>제 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p>제 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좌동</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④ <u>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u></p> <p>⑤ <u>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⑥ 좌동</p>
--	---

[첨부2] 제3호 의안 : 감사위원겸 사외이사선임의 건

구분	성명	출생년월	임기	선임 여부	주요약력(현직포함)	추천인	최근3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감사위원/ 사외이사	김 경	1961.06.22	3년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 2012 : SK 종합화학 재무실장 ● 2013 : SK 에너지 재무실장 ● 2014 ~ 2017 : SK 주식회사 재무실장 ● 2018 ~ 2020 : SK 이노베이션 재무실장 	이사회	-	-	부	부	무